

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

제정 2005. 11. 16.

개정 2008. 4. 11.

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용자인 발주자가 기술개발자에게 지급할 기술사용료의 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기술개발자”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신기술지정을 받은 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.
2. “발주자”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.
3. “기술사용료”라 함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기준(기획재정부 회계예규)에 의거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우하우비(Know-How費)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기준은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정부투자기관, 산하단체,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를 준용할 수 있다.

제4조(공사 참여유형에 따른 기술사용료) 발주자는 기술개발자의

공사 참여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술사용료를 적용하여야 한다.

1. 기술개발자가 기술지도 등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한다. 다만, 기술개발자가 재료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료비를 제외할 수 있다.
2. 기술개발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5조(보호기간에 따른 기술사용료) 신기술 보호기간 이내에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기준은 200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기준은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.